

2025년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산·학공동 프로젝트 2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안)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을 겸비한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 인력양성과 광주·전남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산·학공동 프로젝트」의 2차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 개요

- 사업명 : 2025년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지원목적 : 광주·전남 지역기업의 맞춤형 교육 지원, R&D 기획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기업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원분야 : ①에너지신산업, ②에너지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5. 9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광주전남지역 에너지관련 기업 중 아래 지원대상과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 광주전남 소재 대학 협약(MOU)* 기업에 한함

※ 광주전남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과제참여 대학(해당과제 참여 교수)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광주·전남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자사) * 기업소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 광주전남 소재 대학(전남대, 조선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 限) 협약(MOU)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우대(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산업분야	· 에너지신산업 전·후방 산업 * 배터리(이차전지 등), 전기차(충전인프라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에너지효율 관련(EMS 등),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련산업 전반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공통사항

구 분	유의사항
지원내용	- 패키지지원(R&D기획지원 + 산학공동 협업지원) ※ 패키지지원시 특허 출원/등록 신청기업 우대 - 최대 15,000천원/개사(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지원유형 및 규모 참고) - 특허출원/등록비용 지원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기업부담금	- 산·학공동 협업 지원에 한하여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 부가가치세는 별도 기업부담 - 예) 총사업비(11백만원) : 지원금(10백만원) + 기업부담금(1백만원), * 부가가치세 1,100천원 별도

○ 지원유형 및 규모

- 산·학공동 R&D 기획지원(필수선택)

지원유형	주요내용	지원예산
R&D 기획	- 에너지산업 관련 R&D 사전기획지원 (차년도 중앙 및 지역 R&D과제 공모에 활용) - 애로기술 및 부품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 및 차년도 중앙 및 지역 R&D 과제공모 ※ (대학참여) 기획과정 대학 참여 필수 - 전문가 활용비 지원 : 전문가 1회 지도 시 200천원으로 계 ※ 활용 전문가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지원예산을 고려한 인원 및 횟수 계획 필요 - 결과물 : 공모예정 부처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 1부	최대 3,000천원/건

※ 2자 협약(광주TP↔수혜기업)체결, 수혜기업 선지급 후 결과보고(정산)를 통해 수혜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전문가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산·학공동 R&D 협업지원(1개 이상 선택)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시제품제작 지원	· 제품의 상용화기간 단축 및 성능향상을 위한 시제품/개선 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S/W 설계비 등 지원 ※ 대학 참여 필수(시제품 설계, 개발, 애로기술해결 협업 등)	최대 12,000천원/건
성능시험 분석 및 인증지원	· 시제품제작, 성능시험 및 인증과 연계한 시험평가 지원 · 개발제품 상용화에 요구되는 인증항목별 사전시험 지원 · 제3의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능시험 및 인증비용 지원 ※ 대학 참여 필수(시험평가, 데이터 분석 등)	최대 10,000천원/건
선진기술/ 시장조사	· 기업의 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시장 조사분석 보고서 등 전문서적 구입비용 · 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시장분석, 사업성검토, 특허분석, 등에 대한 전문기관컨설팅 보고서 등 ※ R&D 기획지원과 연계 활용 필수	최대 8,000천원/건
특허 출원/등록 비용 지원	·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발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비용 지원 ※ 해당 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청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개별 신청 가능 ※ 대학 및 수혜 학생이 발명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과제 사사문구 포함 필수	최대 3,000천원/건
제품 고급화 지원	· 기존 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 기능도입 등 - 브랜드 디자인 개발(브랜드 네이밍, 로고, 적용 패키지 등) - 제품 Drawing, 2D/3D Rendering 개발 등 ※ 대학 참여 필수(아이디어 회의 등)	최대 5,000천원/건
홍보물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제품 촬영,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마케팅 진행을 위한 직접비용 지원 ※ 대학 참여 필수(아이디어 회의 등)	최대 5,000천원/건
전시회 참가 지원	· 기업의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장치비, 콘텐츠 제작비 등	최대 5,000천원/건

※ 3자 협약(광주TP↔수혜기업↔공급기업)체결, 결과보고(정산)를 통해 공급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상기 지원유형,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별 패키징 지원 가능 (기획 + all set = 최대 15,000천원 이하)

3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추진절차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모집공고	◆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절차, 평가항목 ◆ 신청 및 접수 : 6.19~6.26	
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서 제출(온라인), 결격사유 등 파악	
선정평가	◆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선정심의 및 지원예산 확정	
수정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의견 및 예산 반영 수정계획서 제출 ◆ 기업-TP간 협약체결(협약설명회 개최)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 사업계획 대비 수행정도 파악(현장모니터링) ◆ 전문가위원 활용을 통한 성과창출 방안 제시	
결과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최종결과(성과)물 확인 위원회 운영 ◆ 사업비 정산 및 확인을 통한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사업화매출·고용·지식재산권 등 정량성과 확인 ◆ 관련분야 연계지원 정보 제공 등(지속)	

4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계획

- 사전검토 : 공고 부합성 및 서류검토 판단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 6. “유의사항 내 지원제외대상” 의 지원 제외대상 해당여부 검토
- 선정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및 발표 또는 서면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대상’ 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선정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및 발표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지원 필요성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보유기술, 시장분석 등 지원의 필요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 사전 연구·준비 충실도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기대효과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고용 및 매출 증대) · MOU등을 통한 산학협업능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날인 후 일괄 PDF 변환 업로드 必)
 - 광주 에너지벨리 기업지원 포털 <http://gjenergy.kr>
 - (문의처) 광주TP 에너지산업센터(062-371-8167, 8164)
- 접수기한 : 2025. 6. 19(목) ~ 2025. 6. 26(목) 15:00 限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접수

No	제출서류	원본여부	서식여부	제출여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양식1	필수
2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 및 자료제공 약약서	원본	양식 내 포함	필수
3	신청자격 확인서	원본		필수
4	정보활용동의서	원본		필수
5	청렴이행 서약서	원본		필수
6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사본	기업제출	필수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기업제출	필수
8	재무제표('22~'24년) 각 1부	사본	기업제출	필수
9	4대보험 가입자명부('24.12월말 기준)	사본	기업제출	필수
10	지원프로그램별 추가 구비 서류(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원본	기업제출	필수
11	광주·전남 소재 대학 업무협약(MOU) 체결서	사본	기업제출	필수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기업제출	해당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안분야(에너지)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지원신청서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선정결과 신청지원금 축소 시 기업 자부담 발생(증가)

※ 사업 신청시 소요예산 과대 산정금지

-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 비율 감액 지급
- 지원신청 마감일 사용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광주 에너지벨리 기업지원 포털(<http://gjenergy.kr>)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주의요망 : 마감일 이전 조기 접수 권장
 - PC 사양 등에 따른 온라인 접수 제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사업비 지급 관련
 - 사업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금액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함
 - 선정,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R&D 기획 지원은 2자 협약(광주TP↔수혜기업)체결, 수혜기업에서 선지급 후 결과보고 (정산)를 통해 수혜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전문가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必)
 - 협업지원은 3자 협약(광주TP↔수혜기업↔공급기업)을 통해 사업종료 후, 공급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구성의 예

- M사는 00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고자 지원금 12,000천원을 신청

광주TP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사업비(A+B)	부가가치세
12,000천원	1,200천원	13,200천원	1,320천원

- 기업부담금(B): TP 지원금(A)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 총사업비(A+B)의 10%로 전액 기업부담

○ 자료제공의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 관리 ·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사업비 지급 관련

- 사업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금액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함

○ 지원 제외대상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 (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3.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8.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 취소

-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주관·참여기관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 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7

기타사항

○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박서진 전임	371-8167	xoxogenie@gjtp.or.kr
	김완근 전임	371-8164	kww@gjtp.or.kr

붙임. 산·학공동 프로젝트 신청서(양식) 1부. 끝.